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270호

도시관리계획(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건설부고시 제2002-283호(2002.12.6.)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286(2003.10.6.)로 개발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417호(2003.12.26.)로 실시계획 승인(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),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9-2222호(2010.1.7.)로 택지개발사업 공사 완료된 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5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(2025.4.23.) 심의결과(원안가결)를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5월 15일

서울특별시장

I. 결정(변경) 취지

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문화·체육시설로 지정된 부지에 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주민편의시설 도입 및 효율적 시설 활용을 위해 허용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

II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일대	660,321.7	-	660,321.7	-

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
3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
1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
2)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)

① 단독주택용지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
② 공동주택용지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
③ 근린생활시설용지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
④ 상업용지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
⑤ 학교시설용지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
⑥ 공공청사용지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
⑦ 사회복지시설용지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
⑧ 문화체육시설용지(변경) 조서

○ 기 정

도면 번호	위치 (획지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
문	문1	용도	· 허용용도 :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,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라목,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5호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(나목의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, 마권전화투표소, 다목적 관람장 제외),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3호에 해당하는 운동시설,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바목인 도서관 · 불허용도 : 허용용도외의 용도
		건폐율	60% 이하
		용적률	200% 이하
		높 이	5층 이하
		배 치	인근 주택지(지구내외)의 조망, 일조 등을 고려하여 배치
		형 태	-
		색 채	-
		건축선	건축한계선 중로 1-2호선(북측)변, 소로 2-2호선(남측)변 : 3m

○ 변 경

도면 번호	위치 (획지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
문	문1	용도	· 허용용도 :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,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,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5호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(나목의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, 마권전화투표소, 다목적 관람장 제외),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3호에 해당하는 운동시설,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바목인 도서관 · 불허용도 : 허용용도외의 용도
		건폐율	60% 이하
		용적률	200% 이하
		높 이	5층 이하
		배 치	인근 주택지(지구내외)의 조망, 일조 등을 고려하여 배치
		형 태	-
		색 채	-
		건축선	건축한계선 중로 1-2호선(북측)변, 소로 2-2호선(남측)변 : 3m

○ 변경사유서

도면 번호	위치 (획지번호)	변경내용	변경사유
문	문1	· 허용용도 -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 →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-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라목 →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	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주민편의시설 도입 및 효율적 시설 활용을 위해 허용용도를 변경함

- ⑨ 전기공급설비용지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 - ⑩ 주차장용지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 - ⑪ 종교시설용지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 - ⑫ 공공시설용지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 - ⑬ 자동차관련시설용지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 - ⑭ 하수도시설용지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4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
Ⅲ. 관계도면 : 붙임참조 (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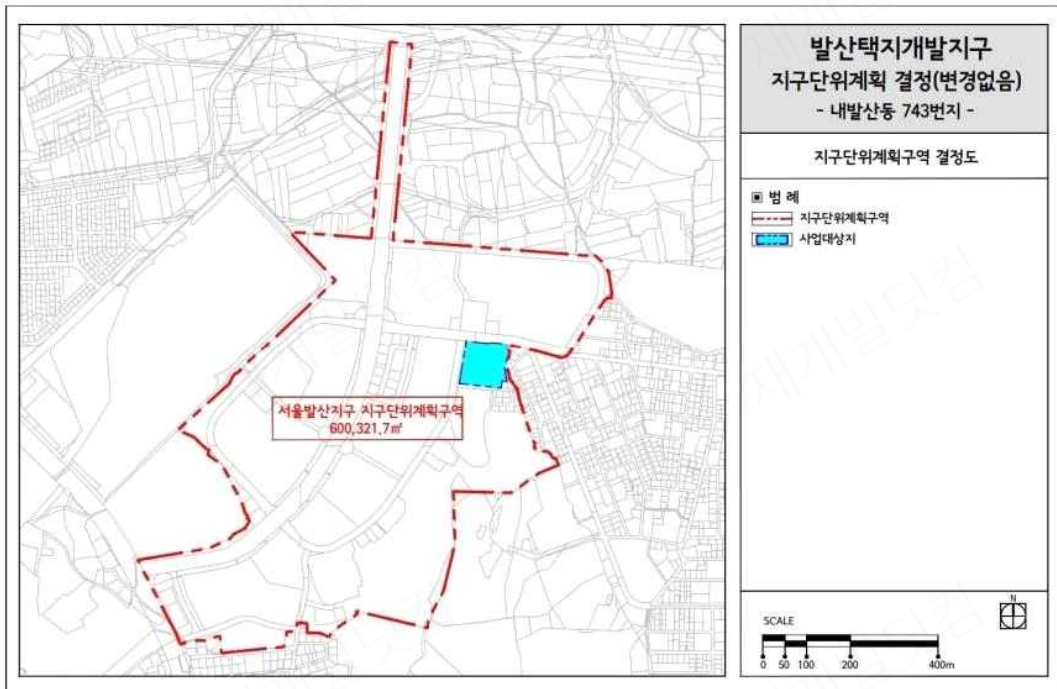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Ⅳ. 열람장소 :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(☎ 02-2133-8399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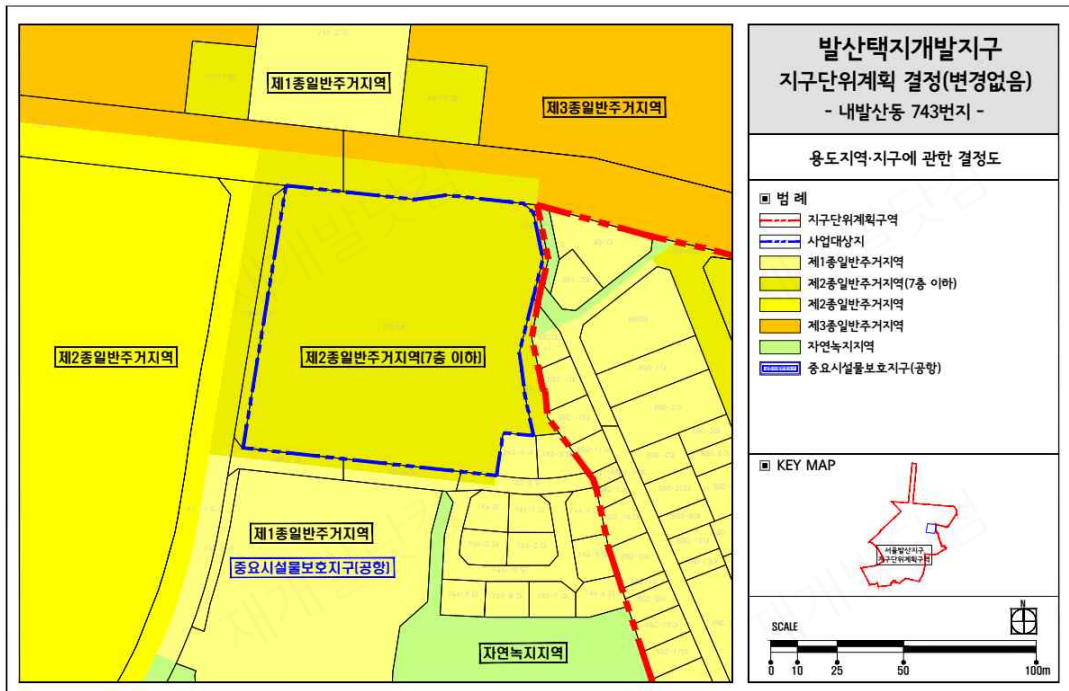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 및 서울도시공간포털(<http://urban.seoul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붙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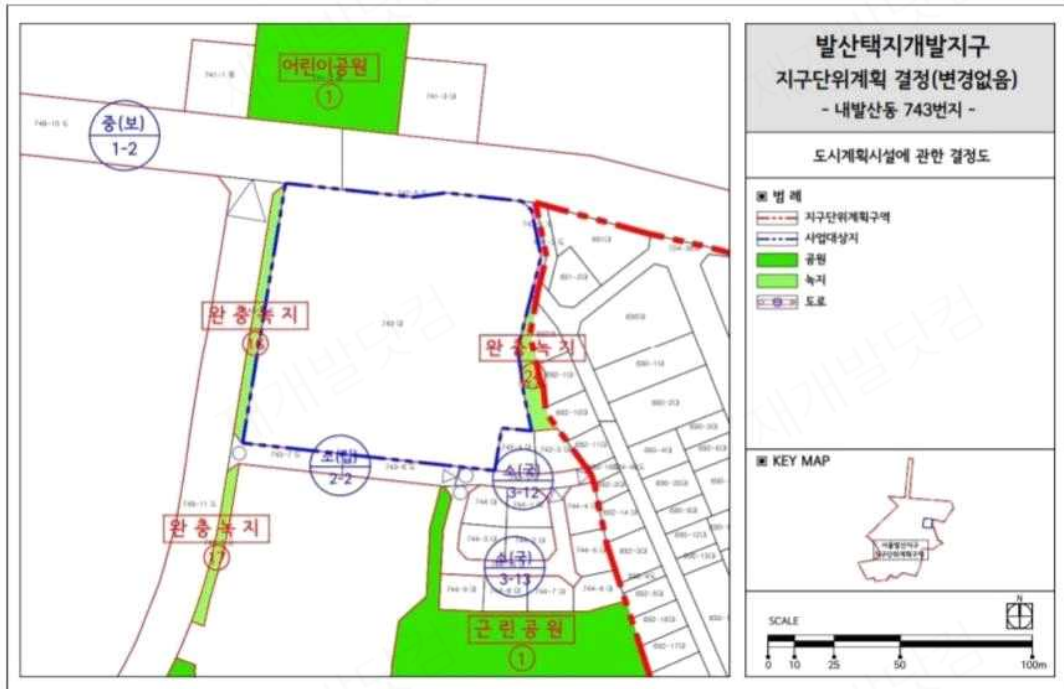
- 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(변경 없음)



- 발산택지개발지구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도(변경 없음)



■ 발산택지개발지구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(변경 없음)



■ 발산택지개발지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(기정)



■ 발산택지개발지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(변경)

